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
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1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(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)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(도서벽지수당)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벽지지역 36개 기관을 별표와 같이 구분함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「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 과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에서 정 하던 것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의 개정되어 특수지근무수당(도서벽지수당)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,
-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특수지근무수당(도서벽지수당)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해당 업무가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 1부.